

회계과 [일반회계]

□ 예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비고
세 입	1,625,534	1,412,600	212,934	15
세 외 수 입	1,397,534	1,378,600	18,934	
보 조 금	34,000	34,000	0	
조 정 교 부 금	194,000	0	194,000	
세 출	2,940,394	2,829,504	110,890	3.92
신뢰받는 회계운영	62,060	62,770	△710	
효율적인 재산관리	2,694,760	2,583,284	111,476	
행정 운영 경비	183,450	183,450	0	
재 무 활 동	124	0	124	

□ 주요 편성현황

가. 세입예산

○ 세외수입(p253)

- 법인카드 발전기금 적립액 --- 34,608천원
(증 4,608천원)
- 조달선고지 대금 환급 --- 14,326천원

○ 조정 교부금 등(p253)

- 중앙동 복합건물 안전시설 보수공사 --- 194,000천원

나. 세출예산

○ 신규편성

- 공유재산 원상복구를 위한 민사소송 강제 집행비 (p257) ---- 6,800천원
- 청사내 화단 수목전정작업 등 (p258) ---- 23,000천원
-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이전 기본설계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(p258) ---- 19,000천원

○ 증액편성

• 공용차량 유류(경유) 50대 (p257)	---	176,400천원 (증 31,176천원)
• 청사유지 관리비(중구청사) (p258)	---	83,000천원 (증 28,000천원)
• 청사유지 관리비(중앙동 복합건물) (p258)	-	18,000천원 (증 3,000천원)

□ 검토 의견

- 회계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1,413백만원 보다 213백만원 증액된 1,626백만원을,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2,829백만원 보다 111백만원 증액된 2,94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.
- 주요예산 편성 사유는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이전 기본설계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, 공유재산 원상복구를 위한 민사소송 강제 집행비 등 신규 편성, 공용차량 유류비(경유) 증액 등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.